요 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조치사항

□ 적용기간 : 20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

※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

- (과태료 부과)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
- (구상권 청구)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

구 분 (1)	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		1단계 ('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개 념		▲생활 속 거리두기	▲지역적 유행 개시	▲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	▲전국적 유행 본격화	▲전국적 대유행
핵심 메시지		▲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	▲지역유행 시작,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	▲지역유행 본격화,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	▲전국 유행 확산,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·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	▲전국적 대유행,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마스크 착용	의무화	▲중점·일반관리시설 ▲대중교통 ▲의료기관, 약국 ▲요양시설 ▲주야간보호시설 ▲집회, 시위장 ▲실내스포츠경기장 등 ▲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 ▲지자체에 신고,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, 행사	▲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	▲실내 전체 ▲위험도 높은 실외* 활동 *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	▲실내 전체 ▲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	
	권 고	▲실내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▲이외 밀집된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			
모임·행사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 - (행 사) 집회, 시위, 설명회, (투자설명회, 재건축 설명회 등),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, 축제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-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 - (각종 시험)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		<정부방침> ▲500명 이상 행사는 **방역계획 수립하여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** 및 방역수칙 의무화	▲1단계 조치 유지 ▲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	▲100인 이상 금지	▲50인 이상 금지	▲10인 이상 금지
		<인천시 조정> ◎ 500명 이상, 신고·협의부서 지정 ▸市 공공행사 : 市 재난안전대책본부(생활방역팀) ▸군·구 공공행사 : 군수·구청장 ※ 그 외 모임·행사 : 개최지의 군수·구청장 ※ 단,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▸(10.13.0시~별도 해제시까지 현행유지)	-	-	-	-

구 분 (2)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	1단계 ('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스포츠 행사	- 관중 입장(50%)	- 관중 입장(30%)	- 관중 입장(10%)	- 무관중 경기	- 경기 중단
민간시설	**중점**관리시설 (9종) ①~⑤유흥시설5종 * (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시설허가·신고면적 150㎡ 이상)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- 이용인원 제한 등 **핵심방역수칙 의무화**	- 이용인원 제한 강화 -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	-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-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-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	▸(집합금지 3종) 1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) 노래연습장 3) 실내 스탠딩공연장	- 필수시설 外 집합금지 -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
	일반관리시설 (14종)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(교습소 포함)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·워터파크 ⑩오락실·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·미용업 ⑬상점·마트·백화점 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㎡ 이상) ⑭독서실·스터디카페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- **정상 운영하되,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** 1) 마스크 착용 2) 출입자 명단관리 3) 환기·소독	-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	- 이용인원 제한 강화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	-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-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	
	기타 시설 (중점·일반 23종 外 시설)	<정부 방침> 정상 운영		-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이용인원 제한 (4㎡당 1명 등)	
		<인천시 조정> ▸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⇒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	-	-	-	

구 분 (3)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	1단계 ('20. 11. 7.(토) 0시 ~ 별도 해제 시)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국공립시설	<정부 방침> 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% 로 제한 - 나머지 국공립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(인원제한 없음)	- 경륜·경마 등 20% 인원 제한 - 이외 시설 운영 (50%)	- 경륜·경마 등 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	- 체육시설, 경륜·경마 등 운영중단 - 이외 시설 운영 (30%)	-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
	<인천시 조정> 1) 정부방침 수용 ▸ 인천대공원, 월미공원 /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⇒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 (인원제한 없음) 2) 일부 인원조정 ▸ 월미바다열차 ⇒ 정원의 60%로 인원제한 운영 ▸ 어린이과학관 ⇒ 정원의 85%로 인원제한 운영	-	-	-	-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	<정부 방침>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*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, 시설별 위험도·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				- 휴관·휴원 권고 - 긴급돌봄 등 유지
	<인천시 조정>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안전형 운영기준 설정 * 단,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				
교통시설	- 마스크 착용 의무화		- 교통수단(차량)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	-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	-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
종교활동 ※ 핵심방역수칙 참고	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- 모임·식사 자제 권고 - 숙박 행사 금지	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30% 이내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정규예배·미사·법회 등 좌석수의 20% 이내로 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- 모임·식사 금지	- 1인 영상만 허용 - 모임·식사 금지
학교 · 유치원	-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	밀집도 2/3 준수	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 2/3)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	밀집도 1/3 준수	원격수업 전환
직장근무	▸ 공공기관 - 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5)	- 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(예 : 전 인원의 1/3)		-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권고	-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
	▸ 민간기업 -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/ 재택근무가 어렵고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	-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·밀집*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,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			

□ 우리 市 행정조치

○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

▸ **(1차)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**
- (적용기간) 2020. 8. 20. 15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0. 12. / (시행) 2020. 10. 13. / (과태료) 10만원 이하

▸ **(2차)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[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변경 발령 예정]**
- (적용기간) 2020. 10. 14. 0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1. 12. 24시 / (과태료 시행) 2020. 11. 13. 0시 ※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
- (과태료) 위반당사자 10만원 / 관리.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

○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※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

▸ **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**
- (적용기간) 2020. 8. 24. 0시 ~ 10. 11. 24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▸ **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**
- (적용기간) 2020. 10. 13. 0시 ~ 별도 해제 시 / (벌금) 30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
- (적용기간) 2020. 8. 26. 0시 ~ 별도 해제 시
- (계도기간) 2020. 10. 11. / (시행) 2020. 10. 12.
- (과태료)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

○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행정조치 [조치 해제] 2020. 9. 14. 0시
- (과태료) 2020. 9. 3. 0시 ~ 9. 13. 24시 /

□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

구 분	조 정(2020. 11. 7. ~)
전자출입명부 의무화	▸ **중점관리시설(9종)** - 유흥·단란·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홍보관, 식당·카페(150㎡이상) **※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·카페(150㎡이상)은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(~ 12. 6.까지)**
출입명부 의무화 (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)	▸ **일반관리시설(13종)** -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 등, 실내체육시설, 이·미용업, 독서실·스터디카페 ※ 일반관리시설 중 상점·마트·백화점(종합**소매업 300㎡ 이상**) **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**

참고 1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(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선택 가능)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		
단란주점		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노래연습장	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▪방역관리자 지정 ▪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▪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	
실내 스탠딩 공연장	▪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▪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▪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▪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▪방역관리자 지정 ▪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▪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▪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▪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▪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▪마스크 착용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 시설 허가·신고 면적 150㎡ 이상)	▪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	▪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▪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▪마스크 착용

중점관리시설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	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▪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▪방역관리자 지정 ▪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▪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▪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▪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**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** ▪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▪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	**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** ▪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▪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참고 2 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영업 관련 FAQ

Q1.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○ **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**가 어려운 경우, **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**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

- 여기에서 **'테이블'**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**분리**하여 **이동 가능한 탁자**를 의미하며,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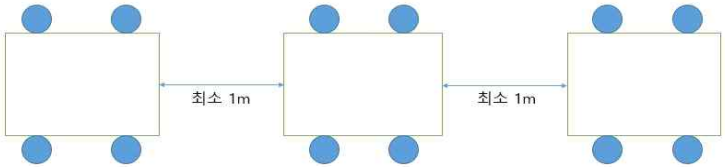
좌석 한 칸 띄워앉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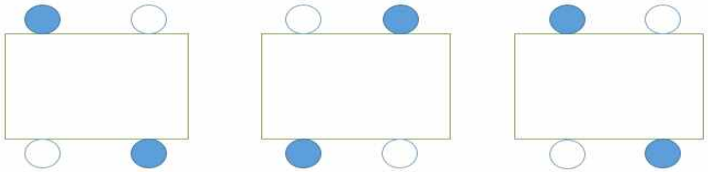
테이블 간 띄워 앉기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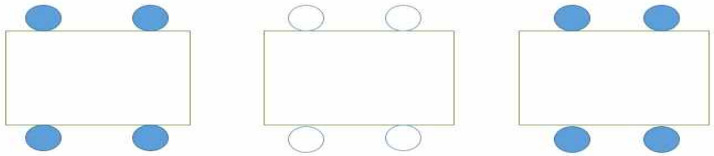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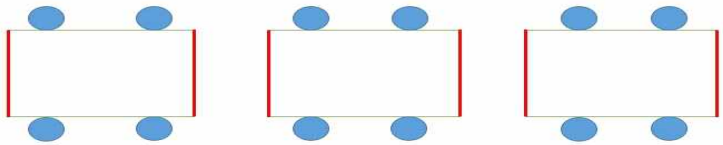

Q2.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/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

○ 칸막이·가림막은 **높이가 70cm 이상,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**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

- 또한, 의무사항은 아니나 **테이블 가운데 칸막이·가림막**을 설치하는 경우 **감염 차단 효과**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

Q3.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, 일부 공간은 좌석/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?

○ 그러한 경우에도 **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**됨

- 예를 들어, 룸(room)과 홀(hall)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,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**다양한 방식을 조합**하여 **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**

Q4. 식당·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?

○ **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**(시설 허가·신고면적 150㎡ 이상)에도 **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**됨

- 다만, **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**한 경우에 대한 **과태료 부과**는 **1개월**의 **계도기간** 후 **12월 7일부터 실시**함

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□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오락실·멀티방, 학원(교습소 포함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이·미용업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실내체육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▸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'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□ 상점·마트·백화점(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, 300㎡ 이상)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▸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 4 집합 · 모임 · 행사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	이용자 수칙
▸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▸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▸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▸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	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▸ 마스크 착용

※ '이용자'라 함은 주최자·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참석자 등 모임·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참고 5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▪ 정규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*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% 이내	▪ 정규예배 · 미사 · 법회 ·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* * 좌석 외의 경우,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% 이내 참여
▪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자제 (숙박행사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	▪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자제 (숙박행사 금지)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
▪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	▪ 시설 내 음식 섭취 자제
▪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	▪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▪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	▪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▪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	▪ 마스크 착용
▪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	▪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▪ 종교행사 전 · 후 시설 소독 및 환기	
▪ 방역관리자 지정	

※ '이용자'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